

● 제319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6. 2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892

### I. 조례안 개요

#### 1. 제출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23. 5. 30.
- 다. 회부일 : 2023. 6. 1.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초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출산 의지가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저출생 해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가장 시급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최근 결혼 연령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 사이에 난자 동결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로, 여성의 가임력을 보존할 수 있는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이 실효성 있고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사업이라고 판

단, 여성·가족분야 전문기관인 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신규 추진하고자 함.

- 이에 2023 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재단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 규모 : 지하 3층, 지하 5층(대지 6,488㎡, 연면적 22,519㎡)
- 관계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2) 주요사업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교육 및 자문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당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 권리 보장에 필요한 지원
- 국내외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 기관과의 연계·교류 및 민간 협력

### 3) 추정개요

- 추정예산 : 320,720천원
  - ※ 총 출연금액 : 16,870,042천원 (기정 출연금액 : 16,549,322천원 포함)
- 추정 필요성
  - 여성이 난자를 얼려두면 가임 연령을 넘어서더라도 임신을 계획했을 때 임신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동결 시술 지원은 장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서울시의 난임 지원 대책 발표(2023.3.9.) 이후 난자 동결 시술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조속한 시행 요구도 많은 상황임
- 추정예산 산출 근거
  - 추정 요청액 : 320,720천원
    - ▶ 사업비 : 300,000천원
    - ▶ 운영비 : 20,720천원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3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sup>1)</sup>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앞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사업 예산에 관한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2 출연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sup>2)</sup>에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법적 타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2023년 기정출연예산은 165억 4천9백만원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2)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들 수 있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으로 제1회 추경을 통해 3억 2천1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출연예산(안) 168억 7천만원을 편성하는 안으로 증액사유로는 난자동결 기술 비용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함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9월부터 난자동결 기술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3억원과 인건비 2천1백만원으로 구성되었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출연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명	가정예산 (A)	증감액 (B)	추경예산 (A+B)	증감내역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16,549	321	16,870	○ 난자동결 기술 비용 지원 신규사업 추진(9월 시행) - 사업비(기술 지원비) : 300백만원 - 인건비 260만원*4개월*2명: 21백만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sup>3)</sup>에 따라 여성, 아동, 가족, 보육 분야의 정책연구나 정책 개발 외에도 기관과의 연계·교류 및 민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2.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3.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교육 및 자문
4.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5.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당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 권리 보장에 필요한 지원
6. 국내외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 기관과의 연계·교류 및 민간 협력
7.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업 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이에 합계출산율 0.59명이라는 서울특별시의 초저출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장래 출산 의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 난임 예방 및 임신·출산을 위한 사전적·적극적 지원을 하려는 난자동결 지원 사업을 여성·가족분야 전문기관이자 서울시 출연기관인 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 또한 여성가족재단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시술 지원비의 50%를 기부금으로 지정기탁 받을 예정으로 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할 것임.
- 다만 본 동의안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추가 출연을 위한 것으로, 긴급한 수요에 대한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타당하고 적합한 것인지와 대상 사업의 증액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3 추가 출연에 따른 동의안 제출의 타당성

- 2023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의에 앞서 여성가족재단 운영 예산의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4)에 따라 사전절차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출연 동의를 의결받은 바 있음.

4)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회계연도의 예산 출연에 대해 이미 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이 출연된 이후, 고유사무의 범위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한 추가 출연에 대해 또다시 의회의 동의를 의결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출연 동의는 말 그대로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로, 출연금의 규모 등 실제 얼마나 출연을 할지 여부는 예산안 심의절차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통해 정해진다 할 것이며, 금번 동의안과 같이 이미 출연이 기동의된 사안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 출연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출연금 금액의 변경을 가하는 것이지 별도의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바, 의회의 의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공기업담당관)에서 법제처에 의회의 추가 출연동의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5)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법령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의견<sup>6)</sup>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임.

행정안전부 검토의견 (재정정책과-506(2019.01.30.))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는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자·출연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출자·출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따라서 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경우 당초 사전의결을 받았던 출자

5)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 법령해석 요청(18-0618)에 대한 검토처리(협의) 결과 알림, 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12, 2019.01.31.; 공기업담당관-1583, 2019.2.1.

출연 필요성, 사업내용 등의 변동이 있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다시 사전 의결을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예산안이 확정된 후 출자·출연기관의 고유 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라면, 예산안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사전의결 사항의 변동여부는 사안에 따라 지방의회와 함께 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3 종합 의견

- 본 동의안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재단 목적사업에 맞는 시책 사업인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출연금의 추가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법규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번 추경을 통해 신규로 추진하는 난자동결 지원사업은 미래 출산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난임 예방 및 임신·출산을 위한 사전적·적극적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의 초저출산 상황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또한 향후 4년간 난자동결 시술 지원비의 50%를 손해보험협회의 기부금으로 지정기탁 받아 예산 활용의 효율성도 높다 하겠음.
- 다만 이번 동의안과 같이 이미 출연이 기동의된 사안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출연기관의 고유 사업의 범위 내에서 추가 출연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출연금 금액의 변경을 가하는 것이지 별

도의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바, 의회의 의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의회 동의를 자칫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출연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문 의 처

이정화 입법조사관 (02-2180-8146)